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17. . . (제 회)	

변리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장관)
제출 연월일	2017.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변리사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일부를 면제 받는 사람이 제2차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산업재산권 제도의 기본인 특허법을 필수로 응시하도록 하고, 변리사 시험 합격자 공고 위치를 특허공보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로 현행화하는 등 기타 미비사항을 정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변리사 제2차 시험 일부 면제자의 응시과목 조정

변리사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일부를 면제 받는 사람은 특허법을 포함하여 2과목을 응시하도록 함

나. 기타 미비사항 정비

변리사 시험 합격자 및 징계의결 결과의 공고 위치를 특허공보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로 변경하고, 변리사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 사항 등을 반영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특허법(이하 “특허법”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2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하여야 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별표 1 제2호나목”을 “별표 1”로, “같은 표 제2호과목”을 “같은 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2조제2항제5호”를 “제2조의2제2항제5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사람의”를 “사람이 특허법을 포함하여 필수과목 2과목을 응시하는 경우에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에서 4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 응시과목 평균점수가 제2항에 따른 최종 순위 합격자의 합격점수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하고, 특허법과 선택과목을 응시하는”으로, “받고, 필수과목”을 “받고 특허법”으로, “필수과목”을 “특허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2조제2항제5호”를 “제2조의2제2항제5호”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제2조제2항”을 “제2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6조 중 “ 「특허법」 제221조에 따른 특허공보”를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제16조의5제2항 전단 중 “법 제6조의12제4항”을 “법 제6조의12제6항”으로 한다.

제21조 중 “ 「특허법」 제221조에 따른 특허공보”를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제22조의2제3호 중 “등록 및 실무수습”을 “등록”으로 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험과목(제3조제1항 관련)

1. 제1차 시험(4과목)

산업재산권법(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및 조약을 포함한다), 민법개론(친족편 및 상속편은 제외한다), 자연과학개론, 영어

2. 제2차 시험(4과목)

가. 필수과목 (3)	특허법(조약을 포함한다), 상표법(조약을 포함한다), 민사소송법
나. 선택과목 (1)	디자인보호법(조약을 포함한다), 저작권법(조약을 포함한다), 산업디자인, 기계설계, 열역학, 금속재료, 유기화학, 화학반응공학, 전기자기학, 회로이론, 반도체공학, 제어공학, 데이터구조론, 발효공학, 분자생물학, 약제학, 약품제조화학, 섬유재료학, 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공학 중 1과목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조제4항, 제4조제3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과목 및 시험 합격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4항, 제4조제3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2조의2에 따라 공고되는 변리사 시험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시험의 과목 및 방법) ① ~ ③ (생략) <u><신설></u></p>	<p>제3조(시험의 과목 및 방법)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특허법(이하 “특허법”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2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하여야 한다.</u></p>
<p>제4조(시험 합격의 기준) ① (생략) ② 제2차 시험에서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u>별표 1 제2호나목</u>에 따른 선택과목(이하 “선택과목”이라 한다)에서 50점 이상을 받고, <u>같은 표 제2호가목</u>에 따른 필수과목(이하 “필수과목”이라 한다)의 각 과목 40점 이상, 필수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필수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의 수가 <u>제2조제2항제5호</u>에 따른 최소합격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필수</p>	<p>제4조(시험 합격의 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 ----- <u>별표 1</u> ----- ----- ----- <u>같은 표</u> ----- ----- ----- ----- ----- ----- ----- ----- ----- ----- ----- ----- ----- ----- ----- ----- ----- ----- ----- <u>제2조의2제2항제5호</u> ----- -----</p>

과목의 각 과목 4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필수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③ 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사람의 경우에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선택과목에서 50점 이상을 받고, 필수과목에서 4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 필수과목 점수가 제2항에 따른 최종 순위 합격자의 합격점수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④ 제2항 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할 때 동점자가 있어 제2조 제2항제5호에 따른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셋째 자리 이하 버림) 계산한다.

제5조(응시수수료 등) ① ~ ③ (생략)

-----.

③ -----

----- 사람이 특허법을 포함하여 필수과목 2과목을 응시하는 경우에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에서 4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 응시과목 평균점수가 제2항에 따른 최종 순위 합격자의 합격점수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하고, 특허법과 선택과목을 응시하는 - 받고 특허법-- 특허법 --.

④ ----- 제2조의 2제2항제5호-----

-----.

제5조(응시수수료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응시수수료의 반환절차 및 반환방법 등은 제2조제2항에 따른 시험 시행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생략)

제6조(합격자의 공고 및 통지) 특허청장은 시험 합격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 또는 「특허법」 제221조에 따른 특허공보에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의5(준용규정) ① (생략)

② 법 제6조의12제2항 후단에 따른 특허법인(유한)의 정관 변경인가 신청 및 법 제6조의12제4항에 따른 등기에 관하여는 제15조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5조 중 “법 제6조의3제2항”은 “법 제6조의12제2항”으로, 같은 조 및 제16조 중 “특허법인”은 “특허법인(유한)”으로 본다.

제21조(징계의결의 통지 및 공고) 특허청장은 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

④ -----
----- 제2조의2제2항-----

-----.

⑤ (현행과 같음)

제6조(합격자의 공고 및 통지) -----

----- 인터넷 홈페이지-----

-----.

제16조의5(준용규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 법 제6조의12제6항-----

-----.

제21조(징계의결의 통지 및 공고) -----

확하게 적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관보 또는 「특허법」 제221조에 따른 특허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특허청장이나 변리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 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 2. (생략)
3. 법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제6조에 따른 변리사의 등록 및 실무수습에 관한 사무
4. ~ 9. (생략)

----- 인터넷 홈페이지-----
-----.

제2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1. · 2. (현행과 같음)
3. -----

등록-----

4. ~ 9.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업재산인력과	
연 락 처	042-481-5187